

나이지리아 석유/가스 거버넌스 연구

박 원 석 교수¹⁾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2012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안) 특징

1. 제도적 개혁
2. 규제감독기관의 재구성
3. 하부석유사업의 규제 완화
4. 조세제도의 개정

III. 2012년 석유산업법(안) 주요 내용

1. 석유산업법(안) 주요 내용
2. 제도적 장치
3. 상부석유사업 운영 및 허가 요건
4. 하부석유사업 라이선싱
5. 하부석유사업 운영
6. 보건, 안전 및 환경(289-298조)

IV. 평가 및 비판

1)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

-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자원에너지 시장의 가격변동이나 수급상황에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비상시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의 직접투자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특히, 외국의 자원개발 법제 동향 및 국제계약에 대한 연구는 미약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연구의 대상도 대부분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에 한정되어 있고, 자원에너지 최대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의 에너지자원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더욱 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동 연구는 나이지리아의 자원개발법제 중 석유 및 가스 개발에 적용되는 제도 등을 연구·분석하여 對나이지리아 석유/가스개발 투자시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여 그 대처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가. 나이지리아 석유/가스 관련 법제 연구·분석

- 석유/가스 산업은 나이지리아 재정수입의 90% 이상, 총 수출금액의 6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2010년 매장량 기준 석유는 세계 10위, 가스는 세계 9위를 차지하며, 생산량 기준으로는 각각 세계 12위와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 석유/가스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관련 법적 토대의 미흡으로 외국인 투자 역시 지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석유산업을 총괄하는 “석유산업법(안)”을 마련하였다.
- “석유산업법”은 1969년 석유법(Petroleum Act), 1957년 석유소득세법(Petroleum Profits Tax Act), 그리고 1977년 석유공사법(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Act) 등 3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하나의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3년 현재 통과되지 않은 실정이다.

나. 연구의 내용

-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분석
 - 석유산업법 제정개요
 - 석유산업법 주요 내용
 - 투명성 제고
 - 세수확보
 - 나이지리아 석유공사의 역할
 - 합작 투자
 - 유의사항

- 나이지리아의 석유/가스 투자 가능성 및 위험성 분석
 - 통합된 “석유산업법”을 분석하여 나이지리아 석유/가스 투자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제공하며, 개정된 “석유산업법”에 내재된 여러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효과적인 석유/가스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석유공사(NNPC)의 역할 및 합작투자방법 그리고 석유산업법의 목표를 분석코자 한다.

- 나이지리아 석유/가스 산업 현황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석유생산국으로서 1971년 이래 OPEC 회원국으로 2011년 현재 매일 253만 배럴을 생산하였지만, 3백만 배럴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매장량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 정보청 자료)
 - 2011년 현재 석유/가스 산업은 나이지리아 수출수입의 95% 이상, 전체 재정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석유는 대부분 Niger Delta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데, 석유자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지역 부족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투자회사들로 하여금 석유선적에 대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주장하게 되었다.
 - 병커링(bunkering)이라 불리는 석유절도는 심각한 송유관 파괴, 생산 감소, 오염, 생산시설 폐쇄 등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 및 파괴의 주범으로 비난 받고 있다.
 - 또한, 아프리카 최대의 천연가스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생산이 제한되고 있다. 석유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 가스는 대부분 flared되어 왔으나, 파이프라인 개발과 LNG 시설 확충, gas flaring 금지정책으로 동 분야에 대한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 2010년 매장량 기준 석유는 세계 10위, 가스는 세계 9위를 차지하며, 생산량 기준으로는 각각 세계 12위와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가스산업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관련 법적 토대의 미흡으로 외국인 투자 역시 지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석유산업을 총괄하는 “석유산업법(안)(The Petroleum Industry Draft Bill 2009)”을 마련하였다.

- 2009년 “석유산업법안”은 1969년 석유법(Petroleum Act), 1957년 석유소득세법(Petroleum Profits Tax Act), 그리고 1977년 석유공사법(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Act) 등 3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하나의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3년 현재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 그러나 나이지리아 의회는 2012년 석유산업법(안)을 다시 마련하여 심의 중에 있고, 2013년 말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

II. 2012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안) 특징

□ 공식명칭: An Act to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isc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etroleum industry in Nigeria and for other matters

- 구성: 총9부 제362개조문과 5개의 부속서(Schedule)로 구성
- 목적

제2조. 석유자원의 소유권

나이지리아 영토 내에 부존하는 모든 석유에 대한 재산권 및 통제는 정부에 귀속함.

- 나이지리아 석유 및 가스 채굴의 증대
-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의 민영화
- 하부석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개방
- 국내 가스시장(특히, 전력 생산 시장)에 대한 가스 공급의 최적화
- 재정체계의 개혁
- 석유산업의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
- 나이지리아 national content 조장이라고 할 수 있음.³⁾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동 법은 석유산업기관과 규제감독기관의 기본체제 재구성 또는 재조직, 상부 석유/가스 생산에 대한 과세제도 개혁, 그리고 하부석유사업의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다⁴⁾.

2) Reveniewatch Institute, The Petroleum Industry Bill and the Future of NNPC, [http://www.reveniewatch.org/sites/default/files/rwi_bp_nnpc_synth_rev2.pdf].

3) International Law Office, Commentary on the Petroleum Industry Bill 2012, [<http://www.international-lawoffice.com/newsletters/detail.aspx?g=3ad51bbe-4156-41b8-855d-aa63c4934d30>]. 석유산업법 제1부(목적: 제1-4조)는 제1조에서 동 법의 목적은 석유산업에 우호적인 비즈니스환경 창출, 나이지리아 석유자원의 탐사 및 채굴활동 개선, 전력생산 및 산업개발을 위한 국내가스공급의 최적화, 석유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고양하는 전향적인 재정체계 수립, 하부석유섹터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자유화, 석유자원 운영의 투명성 및 개방성 촉진, 석유생산과정에 있어 보건, 안전, 및 환경 보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제도적 개혁

동 법은 석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여러 기관들을 설립하거나 역할과 기능을 재조직하였다.

□ 기관

- 석유자원부장관(Minister of Petroleum Resources): 장관의 역할은 법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다.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에 대한 포괄적 감독관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며, 석유산업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 자문, 국제협정 협상, 국제회의에서 나이지리아 대표 등 역할을 수행한다.
- 석유기술국(Petroleum Technical Bureau): 석유자원부장관실에 신설되는 기관으로 장관에 대한 기술적 자문, frontier basins에 채굴 가능한 석유자원 매장량에 대한 정보 취득 및 가능성 확인을 목적으로 frontier basins 지역의 석유/가스 매장량 탐사를 실시한다.
- 규제감독기관: 두 개의 규제감독기관, 상부석유사업청(Upstream Petroleum Inspectorate)과 하부석유사업감독청(Downstream Petroleum Regulatory Agency)을 설립하였다.
- 석유산업교육연구소(Petroleum Training Institute): 장관실 부속기관으로 존속되어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다른 국가의 석유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기술인력을 제공한다.

□ 담당 회사

- 나이지리아 석유자산관리회사(Nigerian Petroleum Assets Management Company Limited)⁵⁾: 나이지리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영석유회사(National Oil Company)에 부여된 권한을 제외하고, 비법인합작회사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분은 국영석유자산관리공사(National Petroleum Assets Management Corporation)가 보유하고 있다.
- 국영석유회사(National Oil Company)⁶⁾: 석유 탐사 및 생산 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석유자산관리회사의 관할하는 비법인합작회사에 대한 권리와 나이지리아 가스회사의 자산을 제외한,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의 자산을 관리한다.

4) Adepetun Caxton-Martins Agbor & Segun, NIGERIAN GAS INDUSTRY OPERATIONS & THE PETROLEUM INDUSTRY BILL 2012 [http://www.acas-law.com/newsletter/ NIGERIAN% 20GAS%20 INDUSTRY % 20OPERATIONS%20 &%20PIB%202012%20-% 20September% 202012.pdf]

5) 동 회사의 설립, 자금조달, 기금의 운용, 자산 및 책임의 양도, 위원회 설립 및 권한 등에 대해서는 동 법 120조-147조 참조.

6) 동 회사의 설립 및 적용 면제 법률의 범위, 주주의 자격 및 범위, 자산 및 책임의 양도,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동 제148조-제158조 참조.

- 국영가스회사(National Gas Company Plc)⁷⁾: 동 법의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Companies and Allied Matters Act에 따라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기존 NNPC의 일부 자산과 책임을 수행한다.

□ 기금 설립

- 석유기술개발기금(Petroleum Industry Development Fund)
 - 기존의 석유기술개발기금법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동 법을 폐기하여 석유기술개발기금을 여러 석유산업기금 중 하나로 재구성하였다.
- 석유가격보전기금(Petroleum Equalization Fund)⁸⁾
 - 기존의 기금을 재설립한 것으로 나이지리아 석유상품 가격 통일화정책으로 석유 상품판매회사가 부담한 손실액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 Petroleum Host Communities Fund⁹⁾
 - 동 법에 따라 신설되는 기금으로 원유 와 가스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을 상부석유 사업자와 석유/가스 생산 지역공동체와 공유하여 동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인프라 개발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다. 동 법은 모든 상부석유사업회사는 연안석유 사업, shallow offshore, deep offshore 석유사업으로 발생한 순수익의 10%를 동 기금에 기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기부기업이 제공한 기부금의 동 회사의 총 임차료에 대한 신용으로 인정한다(기금 관리는 정부가 한다)

2. 규제감독기관의 재구성

- 기존의 석유자원국(Department of Petroleum Resources)과 석유상품가격감독청(Petroleum Products Pricing Regulatory Agency)을 대신하여, 상부석유감독청과 하부석유규제감독청을 설립하였다(동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챗터 참조)
- 상부석유감독청은 석유 탐사 및 채굴에 대한 공개입찰 수행, 라이센스 및 허가증 발급 및 관리, 일상적 규제감독을 수행한다.
- 하부석유감독청도 하부석유사업영역에서 상부석유감독청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하부석유사업영역에 새로운 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두 기관은 국가가스청사전에 따라 가스시장도 공동으로 관리한다.

7) 동 회사의 설립 및 적용 면제 법률의 범위, 주주의 자격 및 범위, 자산 및 책임의 양도,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동 제159조-제169조 참조.

8) 동 기금의 목적 및 설립 그리고 운영, 기금관리위원회의 설립 및 역할 그리고 권한 등에 관해서는 동 법안, 제100조-제114조 참조.

9) 동 기금의 목적 및 설립 그리고 운영, 석유유치지역공동체의 자격, 기금관리위원회의 설립 및 역할 그리고 권한 등에 관해서는 동 법안, 제115조-제118조 참조.

3. 하부석유사업의 규제 완화

- 동 법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하부석유사업, 특히 하부가스사업의 규제완화에 있다. 그러나 하부가스법안(Downstream Gas Bill)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석유산업법(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부가스법안은 하부가스사업의 규제완화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석유산업법(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석유산업법(안)은 하부석유사업시장의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반독점시장관행, 하부시결에 대한 제3자 진입, 에너지안보 보장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부석유감독청은 석유상품에 대한 국가전략비축분의 일정한 유지, 가스생산 허가권자로 하여금 국내가스시장에 공급을 목적으로 생산량의 일정량을 동 기관이 정한 만큼 보유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 한편 가스사업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가스사업허가권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건설, 소유, 그리고 운영허가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 *가공시설(process plants, including liquefaction plants)
- *수송파이프라인
- *석유수송 및 유통망
- *천연가스가공 및 소매시설
- *하부석유사업 및 천연가스 공급

4. 조세제도의 개정

- 현행 조세제도상, 상부석유사업자는 석유수익세법(Petroleum Profits Tax Act)에 따라 석유수익세를 부담하지만, 하부석유사업자를 포함한 기타 회사는 법인세법(Companies Income Tax Act)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현행 석유수익세는 deep offshore와 inland basin에서의 석유사업에 대해서는 50%, onshore와 shallow waters에 대해서는 85%의 석유수익세를 부담하고 있다.¹⁰⁾
- 2012 석유산업법은 현행 석유수익세를 나이지리아 새로운 하이드로카본세(Nigerian Hydrocarbon Tax)와 법인세로 분할하여 부과하는데, NHT는 onshore와 shallow water fields에 대해서는 50%, deep water, bituminous, frontier acreage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한다. 2012 석유산업법은 기존에 법인세의 대상이 아닌 상부석유사업에 대해 30%의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0) PIB 재정조치의 특징에 대해서는 [http://www.kpmg.com/Global/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taxnewsflash/Documents/nigeria-oct3-2012no1.pdf] 참조.

- 생산물분배계약(product sharing contract)에 대한 투자세제혜택(investment tax credit, ITC)과 투자세양허(investment tax allowance, ITA)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생산물양허(general production allowance, GPA) 도입하였다.
- * 현행 조세제도에 따르면 1998년 이전 NNPC와 PSC를 체결한 석유사업자는 석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불한 필요경비(qualifying capital expenditure, QCE)에 대해 50% ITC 받을 수 있었다.
- * 1998년 이후 NNPC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한 석유사업자는 QCE에 대해 50%의 ITA를 받음
- * ITC와 ITA의 차이점은 ITC는 과세금액을 직접적으로 감면하는 반면, ITA는 과세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과세수익을 인하하는 제도
- * GPA는 현행 ITA와 유사하지만 과세금액이 아닌 수익금액을 감소하는 제도이므로 1998년 생산물분배계약자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ITC와 ITA는 QCE의 퍼센티지에 따라 계산되고, 석유사업 전 기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GPA는 다음과 같다
- * onshore 사업자: 최대 누적 생산량 1,000만 배럴까지는 배럴 당 USD 30달러, 또는 공식판매가격(official selling price, OSP)의 30% 중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1000만 배럴 이상 7,000만 배럴에 대해서는 배럴당 USD 10달러, 또는 OSP의 30% 중 적은 금액
- * shallow water 지역 사업자: 최대 누적 생산량 2,000만 배럴까지는 배럴 당 USD 30달러, 또는 공식판매가격의 30% 중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2,000만 배럴 이상 1억5,000만 배럴에 대해서는 배럴당 USD 10달러, 또는 OSP의 30% 중 적은 금액
- * bitumen 매장지, frontier acreages, deep water 지역 사업자: 석유채굴임차계약(Petroleum Mining Lease)에 따라 최대 누적 생산량 2억5,000만 배럴까지는 배럴 당 USD 15달러, 또는 공식판매가격(official selling price, OSP)의 30% 중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2억5,000만 배럴 이상 배럴에 대해서는 배럴당 USD 5달러, 또는 OSP의 10% 중 적은 금액
- * 현행 NNPC와 PSC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TA 또는 ITC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업자: 모든 생산량에 대해 배럴 당 USD 5달러 또는 OSP의 10%

- NNPC와 합작투자를 체결한 석유사업자는 현행 제도상 Petroleum Investment Allowance를 주장할 수 있지만, GPA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가스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 있다.
- NHT는 법인세를 산정하는데 있어 감면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액은 NHT를 계산하는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행 조세제도와는 달리, PSC사업자가 석유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용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2012 석유산업법에서는 감면될 수 없다.
- 나이지리아 밖에서 연간 총 자본지출액의 1%이상 초과하여 지불한 모든 제반 경비, 행정 및 고정비용은 수익금액을 산정하는데 감면될 수 없으며, 위 경비 외 모든 지출액의 20%는 수익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감면될 수 없다. 단, 국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이고 나이지리아 국내물품개발및감시위원회(Nigerian Content Development and Monitoring Board)의 승인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 또는 과세당국에 대한 소송비용과 PSC에 따른 이행채권 취득에 지불한 경비는 제외한다.
- 현행 법상 석유부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일정한 비율로 capital allowance로 인정되는 “qualifying drilling expenditure”로 감면의 대상이었으나, signature bonus는 capital allowance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본 취득 비용을 제공하는 PSC계약자에게 자본에 대한 capital allowance 청구권 부여한다. 2012 석유산업법은 “국영석유회사와 계약자 간 PSC 계약서에 계약자가 장비 취득 비용을 제공하고, 동 장비가 국영석유회사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는 경우, 계약자는 capital allowance 목적상 감면대상 비용의 소유자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PSC 계약자만이 capital allowance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¹⁾
- 상부석유사업자는 매월 onshore, shallow water, deep water에서 발생한 석유사업 순수익의 10%를 PHC Fund에 지불한다. 2012 석유산업법은 “순수익”을 “조정이익+로열티+감면허용액+allowances”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행 법은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의 onshore과 offshore에서 활동하는 모든 석유사업자는 연간 총 예산의 3%를 Niger-Delta Development Commission Act(NDDC Act)에 따라 Niger-Delta Development Commission Fund(NDDC Fund)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11) Hogan Lovells, Overview of the Nigerian Petroleum Industry Bill, [http://www.hoganlovellsafrica.com/uploads/Publications/Africa_September_2012_newsletter_-_Nigerian_Petroleum_Industry_Bill.pdf].

- NDDC Act는 2012년 석유산업법에 통합되어 폐기되는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DDC Fund는 PHC Fund와 별도로 존속하는 기금으로 보여 석유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¹²⁾
- 2012 석유산업법은 PHC Fund 기부금액은 기부회사의 “총 재정임차금액(fiscal rent obligations)”, 즉 “로얄티, 나이지리아 하이드로카본 세금, 상부석유사업에 대한 법인세 총액”의 즉각적 세제혜택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NHT의 감면대상은 아니라고 해석된다.¹³⁾
- 2012 석유산업법은 로얄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다만 법안 발효 후 석유산업부 장관이 제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여 여전히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III. 2012년 석유산업법(안) 주요 내용

1. 석유산업법(안) 주요 내용¹⁴⁾

- 탐사활동 강화 및 매장량 증대
- 천연가스 매장량의 자금화 및 flaring 감소¹⁵⁾
- 상부, 중부, 하부 섹터(upstream, midstream, downstream sector)의 분리
- downstream분야 규제 완화¹⁶⁾
- 입찰(bidding)을 통한 탐사부지 제공
- 정부 배당분의 인상
- 로열티 인상
- 석유생산세 인하
- 고용, 부대 산업 및 지역 석유/가스회사를 통한 지역민 참여 확대
- Petroleum Host Communities Fund(PHCF) 설립

12) Id.

13) Id.

14) ESQ Legal Practice, Magazine, The Petroleum Industry Bill 2012(PIB): A Synopsis, (last visited July 3, 2013)[<http://esqlaw.net/magazine/the-petroleum-industry-bill-2012-pib-a-synopsis>].

15) Dr. Momodu Kassim-Momodu and Professor Cornelius S. Nwajide, The Nigerian Petroleum Industry Bill 2012: Some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Petroleum Technology Development Journal (ISSN 1595-9104), July 2012 – Vol. 2; No 2, [<http://ptdjournal.com/2012/pib2012.pdf>].

16) International Law Office, Commentary on the Petroleum Industry Bill 2012, [<http://www.internationallawoffice.com/newsletters/detail.aspx?g=3ad51bbe-4156-41b8-855d-ea63c4934d30>].

2. 제도적 장치

- o 석유기술국(Petroleum Technical Bureau)
 - * 목적: 장관실에 설치되어 석유자원관리에 대한 장관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장관에게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석유산업정책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개발
 - * 권한: 동 법의 운영감독 및 관련 규정의 시행(허가 및 리스), 석유공사의 권고에 따라 라이선스 및 리스의 부여 및 취소, 규제사항에 대한 감독
 - * 기능: 연방정부 석유정책의 작성 및 시행, 동 법에 따라 설립되는 모든 기관의 예산 조정, 석유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방적이며 경쟁적 조치 마련

- o 상부석유감독청(Upstream Petroleum Inspectorate) (제13조-제42조)
 - * 목적
 - 상부석유사업의 모든 정책, 법률 및 규정을 감독하고 시행하며, 상부석유영역에 대한 허가/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함.
 - 상부석유사업의 계약체결, 석유자원부 소속 석유자원국에 부여된 상부석유분야와 관련된 자산과 책임을 담당함.
 - 내부에 Board를 설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상부석유분야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결정을 수행함
 - * 책임
 - 상부석유사업의 효과적이며 안전한 하부구조 개발의 촉진, 상부석유사업의 모든 기술적 측면의 감독, 장관이 지정한 상부석유사업의 상업적 활동 감독, 상부석유사업에 적용될 기술적 기준 및 세부사항의 이행 및 관리 결정, 상부석유사업의 정부정책 작성, 상부석유사업 투자환경 촉진 등
 - * 기능
 -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상부석유사업의 모든 정책 및 법률 그리고 규정의 관리 및 집행
 - 상부석유사업 관련 모든 라이선스, 허가, leases, 인가 등의 계약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
 - 상부석유사업 관련 모든 시설(plant, installations, facilities)의 디자인, 구매, 건설, 운영, 관리에 대한 승인기준의 수립 및 집행

- 상부석유사업의 국내 및 국제 환경기준과 기술기준의 이행 감독
- 상부석유사업 관련 보건 및 안전조치의 수립, 관리, 감독, 및 집행
- 상부석유사업을 위해 장관 또는 동 공사가 발급 또는 부여한 모든 리스, 라이선스, 허가, 또는 기타 인가 사항 및 갱신, 수정, 연장, 정지 및 취소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보관
- 리스, 라이선스, 허가 또는 기타 인가 보유자의 활동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고 수행
- 상부석유사업의 보고 및 통계의 발표
- 상부석유시설에 대한 제3자 출입을 위한 수수료 책정 및 발표
- seismic, drilling;
- 상부석유사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디자인 및 건설 활동을 위한 허가, 인가, 라이선스권의 발급
- 장관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석유탐사허가권, 석유채굴허가권의 bidding round 수행, 하부구조를 포함한 상부석유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개발의 디자인 승인
- 장관의 승인에 따라 석유생산쿼터 할당
- 상부석유사업 실적에 대한 기준비용(cost benchmarks) 개발
- 동 법과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로열티, 임차료, 수수료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및 집행 등
- * 권한
 - 동 기관이 동 법에 따라 발부한 라이선스 및 허가권의 수정, 연장, 갱신, 정지 및 취소
 - 영업비밀을 불문하고 라이선스권자/임차권자/허가권자(이하, 사업권자)로부터 상부석유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서류의 요청 및 취득
 - 동 174조를 조건으로, 사업권자가 제공한 정보의 공개하거나 위 사업권자에 대해 공개의 요청
 - 동 법상 라이선스, 임차 또는 허가조건과 기타 상세 요건의 집행

- 라이선스, 입찰 또는 허가조건 및 기타 동법의 요건을 미이행한 경우 법률소송의 제기 등
- * 상부석유사업위원회
 - 상부석유사업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상부석유사업위원회(Inspectorate a Board)를 설립하여, 상부석유사업청의 기능 수행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공하고, 그 전략계획을 검토/승인하며, 직원의 업무 내용 및 조건을 결정
- o 하부석유감독청(Downstream Petroleum Regulatory Agency)(제43조-72조)
 - * 목적
 - 동 법안에서 적시한 하부석유사업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동 영역에 대한 허가권을 발급,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됨(법안 제43조 참조, 보완 가능성)
 - * 권한
 - 계약의 체결,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권이 취득, 보유, 저당, 구매, 처분
 - 장관실의 석유자원국과 석유상품가격감독청에 부여된 하부석유사업영역 관련 자산 및 책임 수행
 - * 기능
 - 동 법안에서 적시한 하부석유사업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을 관리하고 집행
 - 하부석유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급되는 모든 라이선스, 허가 및 인가 내용 및 조건의 이행 감독
 - 하부석유사업 관련 모든 시설(plant, installations and facilities)의 디자인 기준, 구매, 건설, 운영 및 유지의 수립 및 집행
 - 하부석유사업 관련 국내/국제 환경기준의 이행 감독
 - 하부석유사업의 보건 및 안전조치의 수립 및 감시/감독
 - 동 기관이 또는 장관이 하부석유사업을 위해 발급(issued) 또는 지급한(granted) 발부한 라이선스, 허가권, 그리고 기타 인가권의 수정, 연장, 갱신, 정지 및 취소에 대한 기록 보관
 - 라이선스, 허가 또는 기타 인가 보유권자의 활동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고 수행하고, 그 이행을 담보함

- 하부석유사업의 보고 및 통계의 공개
- 라이선스, 허가권, 기타 인가권의 발행 및 갱신, 그리고 동 서류의 수정, 개정, 연장, 갱신, 검토, 정지, 취소, 무효, 재발생, 종료 등
- 비차별이며 투명한 방식의 하부석유사업 활동의 감독
- 하부석유사업 실적에 대한 기준비용(cost benchmarks) 수립
- 하부사업영역에서의 원유 및 가스 그리고 석유상품의 대량 저장, 수송 그리고 운송을 감독하고, 일반적 수송체제의 규칙 수립
- 하부석유사업의 지속가능한 인프라개발 촉진
- 하부석유사업의 경쟁 및 민간참여 촉진
- 법령에서 정한 고정세율 및 가격산정 기본정책의 실제적 적용 감독
- 하부석유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제한적 영업관행 규제
-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하부석유사업 종사자들의 적절한 분쟁해결체제 수립 및 이행
- 하부석유사업 관련 장비 및 기타 시설의 감독 및 안전기준 준수 담보
- 석유터미널의 양적 그리고 질적 위생안전기준의 충족시 원유 수출자에 대한 위생 검사증 발부
- 국가가스가가격기본원칙에 따라 전략 분야에 대한 가스 공급의 편리성 확보
- 다음의 하부석유사업¹⁷⁾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및 인가의 발급 및 갱신, 개정, 수정, 연장, 정지, 검토, 취소, 재발급, 무효 또는 종료
- 하부가스판매업자에 대한 도매공급을 위한 규칙 수립; 소비자 권리 보호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석유상품의 공급/유통/판매/소매의 감독

17) 이에는 하부가스유통; 석유상품; 저장; 소부판매시설(retail outlets); 수송; 가스 및 석유화학물 포함 모든 시설의 디자인 및 건설; 법령에서 정한 석유상품의 공정한 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방법 수립;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량 저장 및 유통을 감독하고, 석유상품 및 석유상품 파이프라인 그리고 지역 저장량을 위한 규칙 수립; 그리고 하부석유사업에서의 국가안보적 연료공급 촉진. 법안, 제45조.

-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석유상품의 전략적 비축물의 운영 및 감시
- 연료, 자동차용 바이오연료 및 파생물 등의 안전성 감독 등
- * 권한
 - 동 기관이 동 법에 따라 발부한 라이선스 및 허가권의 수정, 연장, 갱신, 정지 및 취소
 - 하부석유시설에 대한 제3자 출입을 위한 수수료 책정 및 감독
 - 동 174조를 조건으로, 하부사업권자의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서류 요청 및 취득
 - 공익에 해당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하부석유사업권자가 제공한 정보의 공개하거나 위 사업권자에 대해 공개의 요청
 - 동 법상 라이선스, 임차 또는 허가조건과 기타 상세 요건의 집행
 - 라이선스, 임차 또는 허가조건 및 기타 동법의 요건을 미이행한 경우 법률소송의 제기 등
- o 석유기술개발기금(petroleum technology development fund)
- o 석유동등화기금(petroleum equalisation fund, 100조 이하)
- o 석유유치공동체기금(petroleum host communities fund)
- o 국가석유자산관리공사(national petroleum assets management corporation)
- o 국가석유공사(national oil company)
- o 국가가스공사(national gas company PLC)

제4조: 투명성 및 행동규칙(good governance): Nigerian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Act 준수 의무

제5조: 석유자원장관(Minister of Petroleum Resources)은 석유산업 활동의 공동관리책임과 모든 석유사업 및 기관을 감독할 의무 부담

제6조: 장관의 권한 및 업무

제7조: 선취권(pre-emption): 국가 위기상황시 선취권 행사권

3항: 합당한 이유 없이 부속서 1,2,7항의 요건을 미이행하는 경우 N2,500,000달러 벌금

4항: 장관, 장관 대리인, 기타 부속서 8항에 따라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자를 방해하는 자는 N5,000,000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3. 상부석유사업 운영 및 허가 요건

상부석유사업 운영 및 허가 요건은 제3부에 규정되어 있다. 제170조는 나이지리아에서의 석유 탐사 및 개발 그리고 생산을 위한 모든 부지(acreage)는 상부석유사업감독청에 의해 관리되고, 상부석유운영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도 연방정부에 귀속되며 상부석유사업감독청에 의해 관리된다고 하여 석유자원부지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에 대한 소유권도 국가 귀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라이선스 또는 임차권 부여 절차¹⁸⁾

- * 석유탐사라이선스, 석유채취라이선스, 석유채굴임차권 등 세 종류의 허가권이 부여됨.
- * 라이선스 또는 임차권은 동 법 제190조에 규정된 입찰절차에 따라 부여됨.
- * 석유탐사라이선스는 석유채취허가나 석유채굴허가의 대상이 아닌 부지에 대해 부여됨
- * 석유채취라이선스나 석유채굴임차권은 석유에 대하여 부여됨.
- * 동 법상 모든 라이선스나 임차권은 나이지리아 회사법(Companies and Allied Matters Act) 또는 기타 상응하는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만 부여됨

(2) 계약체결권¹⁹⁾

- * 탐사계획, 채취계약, 생산 및 개발계약은 허가권자나 임차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허가권에 따라 석유나 가스 또는 모두에 대해 가능함.
- * 동 조상상의 계약체결권은 동 제194조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나 임차권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익도 양도할 수 없음.

(3)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 clauses)의 부인²⁰⁾

- 라이선스나 임차계약, 합의문서, 상부석유사업운영계약에 로얄티, 수수료, 보너스, 그리고 과세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접근을 방지할 목적으로 포함된 비밀유지조항은 무효이며 어떠한 효력도 없다.
- 그러나 허가권자나 임차권의 산업재산권은 정보의 자유에 대한 나이지리아 국내법,

18) 동 법, 제172조.

19) 동 법, 제173조.

20) 동 법, 제174조.

또는 나이지리아가 당사국인 관련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된다.

- 산업재산권의 범위에 관한 분쟁은 재산권 소유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석유감독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석유감독청이 임명한 단독전문가와 허가권자 또는 임차권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4) 석유탐사 라이선스(petroleum exploration licence)

- 석유탐사라이선스권자는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 석유 발견을 위한 지질학적, geophysical, 그리고 geochemical 탐사를 수행할 비배타적(non-exclusive)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달리 상부석유사업감독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는 한, 단지 percussion drilling 기법만을 이용하여 깊이 150m 이내의 corehole를 drill할 수 있으며²¹⁾ 석유탐사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이다. 그러나 허가받은 부지에서 발견된 석유를 취득, 작업, 저장, 퇴거, 수송, 수출 또는 처리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5) 석유채취라이선스(petroleum prospecting license)²²⁾

1) 채취권자의 권리

- 석유채취라이선스권자는 허가 부지내의 석유탐사활동을 수행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면, 생산시험의 결과 채취활동 중 취득한 원유, 천연가스 또는 bitumen을 퇴거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2) 채취권의 기간 및 범위²³⁾

- 채취권은 onshore와 shallow water areas인 경우, 3년의 초기 탐사기간과 2년의 갱신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동 법 제178.8조에 따른 감정기간, 제178.11조에 따른 상당한 가스발견기간 그리고 기타 동 법상 연장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하다.

- 채취허가부지는 500 스퀘어 킬로미터 그리고 4 입방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deep water areas와 국경지역 부지인 경우, 채취권은 초기 5년의 탐사기간과 3년의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동 법 제178.8조에 따른 감정기간, 제178.11조에 따른 상당한 가스발견기간 그리고 기타 동 법상 연장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동 지역에 대한 채취허가 부지는 1,000 스퀘어 킬로미터 그리고 4 입방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취허가권자의 기본 의무²⁴⁾

- 채취라이선스에는 작업계획(work programme)이 포함되어야 함

21) 동 법, 제175조.

22) 동 법, 제176조.

23) 동 법, 제177조.

24) 동 법, 제178조.

- 동 작업계획에 따라 채취권자는 채취에 도달할 목적으로 지질학적, geophysical 그리고 기타 수락가능한 조사방법을 통해 관련 부지를 탐사할 의무;
- seismic 조사 개시 의무
- 채취권 발급 후 8개월 이내에 현대 석유정 천공기기(drilling outfit)를 이용하여 천공을 개시할 의무를 부담
- 초기 3년 동안 최소 깊이로 한 개이상의 탐사유정을 천공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고, 최소한 특정 깊이의 탐사유정을 한 개 이상 천공할 의무
- 채취권자가 라이선스의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취권자는, 상부석유사업감독청이 달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깊이의 탐사유정을 1개 더 천공하여야 함
- 탐사유정은 석유감독청(***)의 판단으로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별도의 지질적 특성 또는 구조에 존재하는 석유 발견을 목표로 하는 유정이어야 함
- 초기 3년 동안 채취라이선스에 명시된 최소 작업계획을 초과하여 천공된 탐사유정은 갱신 시 요구되는 천공의무에 산입될 수 있음
- 5년 동안의 채취허가 기간 중 석유 발견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경우 발견 후 125일 이내에 또는 석유감독청이 부여한 연장 기간 내에 석유감독청에 통보할 의무
- 석유발견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계획, 감정부지, 상업적 발견의 성격 등을 석유감독청에 제출할 의무
- 감정프로그램이 승인되는 경우 즉각적 개시 의무
- 감정프로그램 제출 후 석유감독청의 60일 이내 결정 의무
- 감정프로그램 완수 후, 채취권자의 상업적 발견이나 상당한 가스 발견을 등기(declare)하거나, 상업적 발견 없음을 통보하여야 함
- 상업적 가스 발견의 경우 10년 이상 발견 부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석유채취라이선스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부지보유권이 소멸하거나, 상업적 발견의 등기 기간 동안 유지됨
- 석유와 가스에 대한 상업적 발견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선언하지 않는 경우, 채취권

은 취소됨; 위 천공작업이나 감정작업 또는 상당한 가스발견 작업은 나이지리아 국내상품함유계획(Nigerian content plan)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시될 수 없음.

4) 상업적 발견 후 개발계획 제출

- 채취권자는 상업적 발견을 등기한 후 최대 7년의 감정기간과 10년의 상당한 가스개발권 기간 동안 부지개발계획과 작업약속을 석유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함.

- 동 개발계획을 미제출하는 경우 채취권은 취소될 수 있음.

- 개발계획에는 기술표준, 최대산출계획, 보건/안전/환경 기준, 나이지리아 국내상품함유계획, 환경관리계획 및 폐정계획, 전형적 gas flaring 제거의무 등이 포함됨.

(6) 석유채굴임차권(petroleum mining leases)²⁵⁾

1) 채굴임차권의 부여

- 석유채굴임차권은 원유, 천연가스, 또는 모두, 또는 bitumen의 상업적 발견 부지 제공을 위해 석유채취권자에게 부여되지만, 원유, 천연가스, 또는 모두, 또는 condensate에 대해 석유감독청이 상업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여될 수 있다.

- 해당 석유채굴임차권이 취소 또는 중요한 경우는 해당 유정이나 상업적 생산을 위해 부여할 수 있다.

2) 채굴임차권자의 배타적 권리²⁶⁾

* 채굴임차권자는 해당 임차지역에 대해 상부석유사업을 수행할 배타적 권리 보유함.

* 채굴임차권에는 추가적인 탐사 및 채취권이 포함됨.

3) 국내 가스수요에 대한 부응 의무²⁷⁾

* 석유감독청은 동 법 제269조에 따라 국내가스시장의 수요를 결정하여, 임차권자에게 국내가스제공의무(Domestic Gas Supply Obligations, 이하 DGSO)를 준수할 책임을 담보함.

* DGSO 기간 동안, 석유감독청은 가스 생산 임차권자로 하여금 생산되는 특정량의 가스를 국내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25) 동 법, 제181조.

26) 동 법 제182조.

27) 동 법, 제183조.

* DGSO에 할당되는 가중 평균 단위당 기준 가격은 수출이나 국내도매시장 판매 기준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GSO 위반자는 해당 벌칙 외에 가스 수출 금지되고, 수출용 가스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체가 금지됨.

4) 채굴기간 및 갱신²⁸⁾

- 석유채굴임차권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채취권이 동 법 제178조제 11항(a)호에 따라 상업적 발견이 선언된 석유채취권으로부터 발급된 경우에는 초기 20년 외에:

* 갱신 및 감정기간을 포함하여 onshore와 shallow water areas에 대한 석유채취권인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총 27년간 유효하며,

* deep water areas와 국경부지에 대한 석유채취권인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총 30년간 유효하다.

* 또한, 석유채굴임차권이 아직 만료하지 아니한 석유채취권에 대해 발급된 경우에는, 동 채굴임차권은 총 20년 외에 잔여 석유채취기간으로 한다.

5) 채굴임차권의 기한에 대한 제한²⁹⁾

- 채굴임차권이 채굴임차권 발급일로부터 동 조에서 정한 개발기간 내에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 채굴임차권은 개발기간의 만료와 함께 취소될 수 있다.

- 제181.2조에 따른 석유채굴임차권의 개발기간은 임차권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동 조 제1하에 따라 부여되는 석유채굴임차권의 개발기간은 on shore와 shallow water 임차권인 경우에는 5년, deep water leases와 국경지역 임차권인 경우에는 최초 채취허가권에 의거하여 발급된 경우 7년, 후속 채굴임차권인 경우에는 10년이다.

- 또한, 채굴임차권이 상업적 생산을 계속하는 경우, 동 임차권은 동 법 제184조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추가적인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으나, 동 임차부지는 반납되어야 하고, 동 법 제190.1조에 따라 신규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 채굴임차권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졌으나, 불가항력, 수리, 유지, 시설의 현대화나 신규 건설을 제외한 다른 이유, 또는 석유감독청에 제시되어 인정 받은 다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상업적 생산이 180일 이상 중단된

28) 동 법, 제184조.

29) 동 법, 제184.2조.

경우에는, 동 채굴임차권은 취소될 수 있다.

- 임차인이 180일 이상 생산을 중단한 후 생산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계획과 개시 약정서를 석유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채굴임차권의 갱신 조건³⁰⁾

- 채굴임차권 만료 전 12개월 이상의 날에 임차인은 석유자원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모든 수수료, 임대료, 로얄티 및 임차허가상의 모든 의무 이행해야 하며, 갱신의 조건은 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신규 임차채권조건이고, 갱신일에 임차허가서에 명시된 갱신보너스를 지불하여야 한다.

7) 탐사, 채취, 임차부지의 반납(Relinquishment)

- 최초 10개 이상의 부지(4입방 Km)에 대해 채취허가권을 취득한 자는 최초 탐사가 종료한 후 50% 이상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채굴임차권, 감정 및 상당한 가스 발견 부지는 계속하여 보유 가능
- 석유채취허가의 갱신기간이 만료한 경우, 석유채굴임차권이나 감정부지 또는 상당한 가스발견부지가 아닌 지역에 대해 모두 반납하여야 함
- 석유채취허가권에 대한 감정기간이 만료한 경우, 감정부지에 대해 달리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는 모두 반납되어야 함
- 석유채취허가권의 상당한 가스발견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달리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든 부지는 반납되어야 함
- 원유, 천연가스, 또는 모두, condensate, bitumen을 생산할 목적으로 채굴임차권이 발급한 후 10년 경과한 경우에는, 상업적 생산이나 석유감독청이 만족할 만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잔여 부지는 모두 반납되어야 함.
- 반납 부지에 대해 채취허가권자나 채굴임차권자는 어떠한 선취권, 선택권 또는 협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반납 부지는 정부에 귀속되어 동 법 190조에 따라 공개입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반납된 임차부지의 임차료는 환불되지 아니하며, 반납 전 부담한 의무나 책임과 상계될 수 없음

30) 동 법, 제185조.

- 보유 부지와 반납 또는 포기 부지의 형태 및 크기는 석유감독청의 승인에 따름
- 8) 채취권 및 채굴임차권의 포기
- 채취권자 또는 채굴임차권자는 채취허가 또는 채굴임차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포기 3개월 전 석유감독청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채취허가증이나 임차증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음
 - 포기 전 지불한 임차료는 환불되지 아니함
- 9) 채취허가증이나 채굴임차권의 부여 절차³¹⁾
- 채취허가증이나 채취허가증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채굴임차권은 석유감독청의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입찰에 의해 발급됨
 - 입찰에 대한 낙찰의 단일 판단 기준(a single bid parameter)은 signature bonus, 기존 로얄티 외에 추가적 로열티율, 최초 탐사기간 중 특정의 최소 깊이로 천공될 유정의 수량에 대한 작업약정, 또는 작업단위에 의해 결정됨
 - 동 법 제191조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량적 낙찰부여는 없음
 - 입찰은 석유감독청의 홈페이지에 일반에 공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최소한 두 개의 국제신문과 두 개의 국내신문에 공표되어야 함
 - 장관이 채취허가나 채굴임차를 위한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 석유감독청은 기술적, 법적, 경제적, 재정적 요건 외에 채취허가나 채굴임차를 위한 최소 경험 및 능력을 요구하여 함. 이를 위해 석유감독청은 지침서를 마련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일 기준에 의한 입찰은 공개된 지침과 Nigeria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NEITI)의 감독하에 이루어짐
 - 특별한 경우, 대통령은 채취허가증이나 채굴임차권을 발급할 수 있음
- 10) 탐사 및 채취 허가권자와 채굴임차권자의 부지 반납 전 선택 의무³²⁾
- 탐사 및 채취 허가권자와 채굴임차권자는 반납일자나 만료 전 지속적 탐사, 개발 또는 생산 부지나, 감정, 상당한 가스개발보유부지, 또는 상업적 발견부지로서 제안할 허가 및 임차 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31) 동 법, 제190조.

32) 동 법, 제193조.

11) 양도, 인수 및 합병³³⁾

- 허가권자나 임차권자 또는 생산물분배계약자가 다른 기업에 의해 주식 매매를 통해 양도되거나, 또는 인수합병(M&A)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나이지리아 내의 양도로 간주되어 동 법과 관련 시행령의 적용 대상임
- 허가권자나 채굴임차권자는 장관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음
- 양도의 신청은 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양도는 명성, 충분한 기술력, 경험, 효과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양수인이 운영자인 경우에는 입증된 운영 경험, 운영사항에 관한 기술서비스계약에 따른 유관 운영자의 결정 등을 고려
- 동 법의 시행령에 따라 양도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하나, 양도인의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양도되고, 효율성 제고 및 석유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자원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면제 가능.

12) 라이선스 및 채굴임차권의 취소 사유³⁴⁾

- 나이지리아 자연인 또는 기업에 석유사업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시민이나 기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 받는 허가권자 또는 채굴임차권자
- 비계속성, 비기업성, 석유산업 모범관행에 어긋난다고 감독관이 판단하는 경우
- 라이선스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기한이 도래한 수수료, 임차료, 로얄티 미지급(지급 요청 불문)
- 동 법 또는 기타 법에 명시된 영업활동 보고서 미제출
- 장관의 서면 승인 없이 라이선스상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 석유산업모범관행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을 미이행한다고 감독관이 판단하는 경우

33) 동 법, 제194조.

34) 동 법, 제195조.

-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corrupt practices)으로 라이선스 또는 임차권을 취득 또는 인수한 경우
- 권한을 남용하여 라이선스 또는 리스를 취득한 전직 또는 현직 공무원의 소유 또는 통제에 있는 경우
- 이 외에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전 항변(196조), 수수료 및 로얄티 지불의무, 보호 대상 수목이나 목적물의 훼손 금지 의무(제198) 및 배상의무(제199조) 등이 규정되어 있음

13) 환경 관리 의무³⁵⁾

- 상부석유사업 종사자는 동 법 발효 1년 이내에 또는 허가권 발부 3개월 이내에 환경관리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 동 계획서 기본 기재사항: 환경정책, 목적, 목표, 관련 법률 및 법규, 지침 및 기준 준수 약속
- 환경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에는 환경영향에 대한 기본 정보, 보호 및 구제조치, 환경관리 목표; 탐사계획 및 생산활동의 환경적 영향, 석유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감정 등이 포함됨
- 환경 파괴 및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법 및 작업활동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위험을 피고용인에게 통보하기 위한 방법 등 환경인식계획 마련
- 환경 오염 및 파괴 행위 또는 활동의 수정, 시정, 제한 또는 정지 계획; 환경오염 통제 및 구제 계획; 폐기물 관리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 계획

14) 환경피해 구제펀드 기부 의무³⁶⁾

- 허가증이나 채굴임차권의 발부 조건으로, 그리고 석유감독청의 환경관리계획 승인 전, 허가권자와 채굴임차권자는 석유감독청이 허가증이나 임차권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복원 또는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환경구제펀드에 지정 금액을 지불하여야 함
- 부정적 환경영향을 복원 또는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통지 후 동 기금을 사용
- 허가권자나 채굴임차권자는 매년 자신의 환경책임을 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부금을 인상하여야 함

35) 동 법, 제200조.

36) 동 법, 제203조.

- 허가권자나 채굴임차권자의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한 자기 평가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석유감독청은 독립 기관에 의뢰하여 기부금을 산정할 수 있음

15) Gas Flaring 벌금

- 채굴임차권자는 장관이 정한 gas flaring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 채굴임차권자는 flared 가스량을 적절히 측정할 장비를 석유감독청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4. 하부석유사업 라이선싱

(1) 하부석유사업 라이선싱의 범위

- o 하부석유사업은 하부석유사업규제감독청(Downstream Petroleum Regulatory Agency)의 관할을 받음.
- o 하부규제사업감독청이 발급하는 하부석유사업 허가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액화가스 가공시설을 포함한, 가공설비의 건설 및 운영권을 발급할 권한 행사
 - 원유 및 가스, condensate, 또는 석유제품의 운송파이프의 건설 및 운영
 - 석유수송망의 건설 및 운영
 - 석유유통망의 건설 및 운영
 - 하부석유상품 및 천연가스의 공급
 - 하부상품이나 천연가스 가공 또는 소매시설의 소유 및 운영
- o 하부석유사업규제감독청은 석유상품의 가공, 유통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화공품을 포함하여, 하부석유사업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화공품의 이용에 관한 허가증의 발부

(2) 하부석유사업 허가증 발급조건

- 허가증에 명시되는 사항에 대한 하부석유사업규제감독청의 지시사항 준수
- 허가증에 명시된 모든 사항의 이행 및 자제
- 허가증에 명시된 행위 수행 전 규제감독청의 승인 확보
- 허가 또는 인가 관련 요구 정보의 제공 등

| 허가증 | 기능 | 의무 |
|----------------|-----------------------------------|----|
| 수송 파이프라인 소유허가증 | 특정루트 수송파이프라인 | |
| 수송망운영자 허가증 | 가스유통망 운영 | |
| 가스 공급 허가증 | 가스구매자에 대한 가스 판매 및 공급 | |
| 가스유통허가증 | 지방유통지역에서의 가스유통시스템 운영 | |
| 천연가스가공허가증 | 가스제조 프랜차이즈지역 창출을 위한 상부/하부 감독청이 발부 | |

(3) 허가증의 양도

- 규제감독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는 허가증 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의 양도 또는 이전 금지
- 허가증의 양도 또는 이전 신청은 규제감독청에 제출
- 허가증의 양도 또는 이전을 허용하는 기준:
 - *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개정절차와 동일한 절차
 - * 양수인이 신규허가증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 및 기준, 그리고 동일한 사안 고려
 - * 시행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신청과 관련된 제3자의 주장에 대한 고려

(4) 허가 취소 및 정지

- 허가조건이나 시행령 또는 동법 규정에 대한 계속적 위반
- 허가증 정지 또는 취소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만료한 경우에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미비

5. 하부석유사업 운영

(1) 기본원칙

- 규제완화: 하부석유사업영역에서 석유상품의 가격산정은 시장가격, 석유상품의 충분한 공급, 경제적 왜곡 제거, 그리고 상품상품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함
- 자유로운 진출: 하부석유사업 운영자가 소유하는 jetties, 전재시설, 저장고 또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인가기업의 접근 보장
- 독립 파이프라인 및 저장고의 건설 및 운영: 모든 석유판매회사, 석유상품의 대량 구매자, 또는 독립 정유소는 독립된 파이프라인이나, 저장고 또는 jetties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및 운영 가능

(2) 규제감독청의 감독 사항

- 파이프라인 수송 수수료, 석유상품 대량 저장 수수료, 개방이용시설의 이용료 감독
- 규제감독청은 석유자원부 시행령에 따라 석유상품의 국가전략비축물의 유통 및 저장의 관리
- 가격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시장에서의 석유상품 가격 감시
- 이 외에 위반사항 및 처벌조항, 분쟁해결 등

(3) 가스사업에 대한 특별 규정

o 수송파이프라인 소유허가증(transportation pipelines owner license)

- Oil Pipelines Act와 관계 없이, 규제감독청은 수송파이프라인 소유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에는 허가증에 명시된 루트 내에서 수송파이프라인을 소유, 운영, 관리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음.
- 수송파이프라인 소유 허가권자는 동 허가증에 명시된 활동을 의무이행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할 의무 부담
- 이 외에 수송파이프라인 소유 허가권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건안전법규 준수 의무, 환경의 보호, 관리 및 복원에 필요한 요건의 준수의무

제5부: Downstream 석유: 운영, 가스에 대한 특별규정(230조-274조), 가스 flaring 금지 및 처벌규정(제275조-283조)

o 수송망 운영 허가증(transportation network operator license)

- 규제감독청은 수송망 운영 허가증을 발부할 수 있고, 이 허가증에는 수송망을 통한 가스의 운송, 수송망의 입고 및 출고 산정, 수송망의 제3자의 이용, 이용료 부과 등에 기재됨
- 수송망 운영자는 가스 수송망의 안전한 운영, 공평하고 투명한 접근 등을 제공할 일반적 의무 부담
- 수송망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요청, 이용료 청구 등을 요구할 권리 보유

o 가스공급 허가증(gas supply license)

- 규제감독청은 하부석유사업영역으로 가스를 공급할 가스공급허가증을 발부할 수 있음

- 가스공급자는 일반적 의무와 권리를 보유
- o 가스유통허가증(gas distribution license)
 - 규제감독청은 특정 지역의 유통구역 내에서 가스유통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가스유통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음
 - 가스유통업자는 일반적 의무와 권리를 보유
- o 가스 flaring 금지
 - 천연가스에 대한 flare 또는 venting 금지. 동 금지사항은 동 법 제277조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석유자원부 장관이 시행령에서 지정한 날 이후 적용되고, 모든 석유/가스 생산시설과 가공 및 처리 시설, onshore/offshore 등을 불문하고 적용됨
 - 가스 flaring 계획: flared 가스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가스 운영자는 동 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flared 가스자원 모두를 분류(daily flare quantity, reserve, location, composition)하여 규제감독청에 가스이용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동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flared 또는 vented gas에 상응하는 가치 이상의 벌금이 부과됨

6. 보건, 안전 및 환경(289-298조)

- (1) 석유산업 관련 보건, 안전, 환경 문제에 대한 두 감독청의 책임
 -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 및 권한과 별도로, 상부석유감독청과 하부석유감독청은 각각의 관할에 있는 석유산업 관련 보건, 안전,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 부담
 - 상부석유감독청과 하부석유감독청은 환경부와 기타 다른 관련 정부기관이 제정한 기타 다른 환경법, 시행령, 지침 및 기준을 집행
 - 관할 및 책임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감독청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석유산업의 환경문제에 관한 시행령 및 지침을 제정
- (2) 보건규정의 준수
 - 나이지리아에서 상부 및 하부 석유산업에서 허가증, 임차권 또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환경부, 석유자원부장관, 두 감독청이 제정하는 모든 환경, 보건, 안전 법률, 시행령,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운영 규범

- 나이지리아에서 상부 및 하부 석유산업에서 허가증, 임차권 또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전한 환경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국제법상 인정되는 지속가능한 원칙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할 의무 부담

(4) 허가권자, 채굴임차권자 및 계약자의 의무

- 나이지리아에서 상부 및 하부 석유산업에서 허가증, 임차권 또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 부담:
 - *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주의원칙의 채택
 - * 나이지리아에서 탐사 및 개발을 위해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의 조장
 - *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에 승인된 환경지침 및 기준의 준수

(5) 환경 복원 의무

- 나이지리아에서 상부 및 하부 석유산업에서 허가증, 임차권 또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 * 하부석유감독청이 승인한 채굴임차권자의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영향을 관리하고;
 - *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채취허가권자나 채굴임차권자의 탐사 및 생산 작업의 결과 발생한 환경영향을 그 자연 상태 또는 기존의 상태로 복원하거나,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일반원칙과 합치하는 상태로 복원
- 그러나 허가권자나 임차권자는 석유시설에 대한 사보타지(석유파이프라인과 저장장치 훼손)로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환경 침해의 원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권자나 채굴임차권자 또는 기타 피해자는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분쟁사항을 하부석유감독청에 회부하여야 하고, 하부석유감독청이 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함
- 환경 침해의 원인이 사보타지의 결과로 판명된 경우, 복원 및 구제 비용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정부 책임

(6) 배상

- 탐사허가권자, 채취허가권자, 채굴임차권자는 동 법의 다른 규정상의 책임 외에, 토지 이용이나 기타 권리 방해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적법 점유자에게 하부석유감독청이 마련한 서면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충분한 배상 책임을 부담. 동 지침에 포함된 배상액은 협의과정을 통해 도달하여야 하고, 하부석유감독청은 동 지침을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하여 매년 갱신함

(7) 처벌 및 벌금

- 동 규정의 위반자는 두 감독청이 규정한 벌금을 포함 제재

IV. 평가 및 비판

1. 평가

o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통과지연³⁷⁾

- 석유가스 산업이 나이지리아 재정수입의 90% 이상, 2010년 기준 총 수출금액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관련 법적 토대의 미흡으로 외국인 투자가 정체되고 있다.³⁸⁾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다른 산유국에 비해 메이저 오일 회사(IOCs)들에게 생산비용과 서비스요금의 과다 책정, 세금 탈루 등으로 정부 수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에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석유산업법이 자신들의 입지 축소와 수익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³⁹⁾

o 석유 탐사와 채취 허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 석유산업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석유/가스 부문의 사업허가, 임차,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으나 상당 부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⁴⁰⁾

- 석유 탐사와 채취 허가에 대한 공개입찰제도의 도입:

- * 상부석유감독청은 석유 탐사 및 채굴에 대한 공개입찰 수행

- * 라이선스 또는 임차권은 동 법 제190조에 규정된 입찰절차에 따라 부여됨

- * 반납 부지는 정부에 귀속되어 동 법 190조에 따라 공개입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7)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Hogan Lovells, Overview of the Nigerian Petroleum Industry Bill, [http://www.hoganlovellsafrica.com/_uploads/Publications/Africa_September_2012_newsletter_-_Nigerian_Petroleum_Industry_Bill.pdf]. 2012년 법안의 입안 배경에는, 법안의 조세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감소, 가나, 앙골라 등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 내 석유산업 경쟁국가 출현, 하부산업 규제완화로 인한 연료가격 인상 등이 있다. 연료가격의 인상으로 유발된 전국적 파업은 6일 동안 나이지리아 경제를 마비시켰다. Id.

38) KOTRA 글로벌윈도우,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통과지연,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2144843&ARTICLE_SE=20302].

39) Hogan Lovells, Overview of the Nigerian Petroleum Industry Bill, [http://www.hoganlovellsafrica.com/_uploads/Publications/Africa_September_2012_newsletter_-_Nigerian_Petroleum_Industry_Bill.pdf].

40) BusinessDay, The current status of the Petroleum Industry Bill 2012, [http://www.businessdayonline.com/NG/index.php/law/the-specialist/46082-the-current-status-of-the-petroleum-industry-bill- 2012] 참조.

- * 채취허가증이나 채굴허가증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채굴임차권은 석유감독청의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입찰에 의해 발급됨
- * 입찰은 석유감독청의 홈페이지에 일반에 공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최소한 두 개의 국제신문과 두 개의 국내신문에 공표되어야 함
- * 장관이 채취허가나 채굴임차를 위한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 석유감독청은 기술적, 법적, 경제적, 재정적 요건 외에 채취허가나 채굴임차를 위한 최소 경험 및 능력을 요구하여 함. 이를 위해 석유감독청은 지침서를 마련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단일 기준에 의한 입찰은 공개된 지침과 Nigeria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NEITI)의 감독하에 이루어짐

o 조세 부담 증대

- 세수 증대를 위해 상부(upstream) 부문에 기존의 석유수익세(Petroleum Profits Tax)를 법인세와 하이드로카본세(Nigerian Hydrocarbon tax)로 분리하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할 예정
- * 법인세는 기존 법에서는 면제 받았으나 새로운 조세제도로 납부 대상으로 변경되어 조세 부담이 증대됨
- * 하이드로카본세는 기존 법에서는 이윤(profits)에 부과되었으나 석유생산에 비례하여 과세될 예정이므로 석유사업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석유사업 상류부문의 사업형태, 즉 onshore, offshore, 또는 inland에 따라 렌트, 로열티,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특혜 없는 동등한 대우 규정

o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의 분할 및 법인화

- 정부 부서였던 NNPC의 자산과 권한은 나이지리아 석유자산관리회사(Nigerian Petroleum Assets Management Company Limited), 국영석유회사(National Oil Company), 국영가스회사(National Gas Company Plc)로 분할되고, 그 성격도 독립적인 법인으로 변경되며, 다른 석유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로열티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소유구조는 정부 기업 형태이며, 노르웨이의 STATOIL, 브라질의 Petrobras, 말레이시아의 Petronas 또는 베네수엘라의 PDVSA와 같이 성공적인 정부기업형태를 모델로 함⁴¹⁾

41) KOTRA 글로벌윈도우,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통과지연,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2144843&ARTICLE_SE=20302].

- 합작투자에 대한 생산양허(production allowance) 폐지⁴²⁾

2. 비판

○ 조세비용의 인상

- 2012 석유산업법은 나이지리아 하이드로카본세, 법인세, 높은 임대료와 로얄티, PHC Fund, NDDC Fund, 교육세 등 여러 부가적인 세금의 신설 또는 인상으로 인해 조세비용이 증대하였고, 특히 deep offshore 석유사업에서 뚜렷이 나타남

○ 기존의 생산물분배계약의 소급적 파기

- 기존의 PSC 계약을 소급적으로 파기하거나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세 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외국인투자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함

○ 석유개발부지의 취소

- 개발이 안된 부지에 대한 석유개발권 취소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불공정한 부과금 산정 방법

- 2012 석유산업법은 석유 수출량이 아니라 석유 생산량을 기준으로 각종 부과금을 산정하지만, 보안비용이나 사보타지로 발생한 파손된 물류시설의 수리비용 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임

○ 규제감독기관 역할 및 기능의 중복성

- 2012 석유산업법, 특히 하부석유사업 기반시설의 개발에 대한 자금조달 책임의 중복성을 가짐

○ Gas Flaring 금지기한의 비현실성

- 2012 석유산업법은 gas flaring 금지 기한을 2012년 12월 31로 하고 있으나 2013년 10월까지 발효하지 않고 있음

○ 석유산업부 장관의 과도한 권한

- 석유산업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을 발급, 취소, 양도할 권한을 가짐

42)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New Petroleum Industry Bill for Nigeria – Debbie Legall, [http://www.ibanet.org/Article/Detail.aspx?Article_Uid=6fa3d18b-635f-41f4-b90d-bbfb85d00649].